

설계변경 본부 위원회 자문 의견서

- 공 사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
- 자문안건 : 937정거장 1번출입구,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
설계변경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출입구 및 환기구 이동에 따른 기존부 제외 ○ 정거장 환기구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와 재건축조합과의 협약에 의한 출입구 및 환기구 이동에 따른 제외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○ 정거장 환기구의 도로중앙분리대 이동 및 변경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 적정함
공법변경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거장 환기구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초 공법적용으로 적정함
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·경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출입구 및 환기구 이동에 의한 물량 삭제 및 공사비 감액 ○ 정거장 환기구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계약단가 적용 하였으며 공사물량 감소에 의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반영함

2018. 3. .

자문위원 : 나 상 호  (서명)

설계변경 본부 위원회 자문 의견서

- 공 사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
- 자문안건 : 937정거장 1번출입구,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
설계변경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초 보도상에 계획된 #1외부 출입구, 환기구 등을 재건축사업 부지내 이동으로 삭제 - 보도상 등축 환기구를 도로 중앙분리대로 이동(#2, #4) 및 규모축소(#1~#4) 관련 설계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입구(#1) 및 환기구 삭제는 단순 재건축 조항과 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이므로 타당함. - 환기구 위치 변경은 환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보행권 보장, 도로 도시 미관 제고, 시민편익 증진, 만원 해소 효과가 기대되며 타당함.
공법변경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기 덕트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 및 외부출입구 #1 삭제로 인한 공법 변경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순한 위치 변경으로 인한 문양조정 출입구 #1 삭제 사항은 공법변경은 해당사항 없음.
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·경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#1 출입구 및 환기구 삭제 - 환기구 #2, #4 보도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로 이동 - 환기구 #1~#4 규모 축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#1 출입구 및 환기구 등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내 이동으로 삭제된 사항은 적정함. - 정거장 환기구 #2, #4를 보도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로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적정함 - 환기구 #1~#4 규모 축소는 경제성은 고려하였음.

2018. 3. 7.

자문위원 : 김 춘 호 (서명)

설계변경 본부 위원회 자문 의견서

- 공 사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
- 자문안건 : 937정거장 1번출입구,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
설계변경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37정거장 1번출입구 및 환기구 등 설계변경 타당성검토 - 정거장 환기구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도상의 937정거장 1번출입구 및 환기구 등을 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로 이동 설계변경은 타당함. - 돌출 구조물인 정거장 환기구를 도로중앙분리대로 이동(#2,#4)하고 규모축소(#1~#4) 설계변경은 타당함.
공법변경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37정거장 1번 출입구 및 환기구 등 공법변경 적정성검토 - 정거장 환기구 공법변경의 적정성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이동계획에 따른 공법변경 사항 없으므로 적정, - 돌출 구조물인 정거장 환기구를 도로중앙분리대로 이동 및 규모축소에 따른 공법변경은 없음. (배기 및 급기이 레관 용량은 중방관의 여유검토 요망)
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 · 경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37정거장 1번 출입구 및 환기구 등 설계변경에 대가 및 적용 적정성검토 - 정거장 환기구 공법변경 대가 및 적용 적정성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 이동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조건이므로 적정성 및 경제성 확보 가능. - 도로중앙분리대로 이동 및 규모축소로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.

2018. 3. 7 .

자문위원 : 이 규 웅 (자명)

설계변경 본부 위원회 자문 의견서

- 공 사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
- 자문안건 : 937정거장 1번출입구,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
설계변경의 타당성	937정거장 1번출입구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	이동가능. 환기구를 재검토부처로 1번출입구로 이동하는 방안이 타당하며,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개선이 필요하며 타당하다.
공법변경의 적정성	"	937정거장 1번출입구 환기구는 기존에 설치된 환기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타당하며,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개선이 필요하며 타당하다.
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·경제성	"	환기구의 이동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여, 환기구의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개선이 필요하며 타당하다.

2018. 3. 7.

자문위원 : 김 등호

설계변경 본부 위원회 자문 의견서

- 공 사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
- 자문안건 : 937정거장 1번출입구,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
설계변경의 타당성	적 정	-
공법변경의 적정성	적 정	-
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 · 경제성	○출입구 부대설비 등	○당초 출입구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신설 출입구에 설치여부 및 비용부담 주체를 확인하시기 바람

2018. 3. 7.

자문위원 : 최진규 (서명) 

설계변경 본부 위원회 자문 의견서

- 공 사 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
- 자문안건 : 937정거장 1번출입구, 환기구 이동 및 규모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
설계변경의 타당성	당초 보도상에 계획된 외부출입구 1번, 환기구 규모 조정 등	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외부출입구 1번과 환기구를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 이동으로 전체 공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공법변경의 적정성		
대가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·경제성	공사비 단가산출 등 적용	설계변경 대상이 신규비목 없이 수량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

2018. 3. 7 .

자문위원 : 